

# 의학계열 연구전담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일 : 2025.07.01.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의학계열 연구전담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계약, 처우, 복무, 재임용, 승진, 업적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의학계열 연구전담 전임교원이라 함은 본교 의료기관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세계적 수준의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별도의 계약으로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② 의학계열 연구전담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로서의 책임과 신분을 보유한다.

**제3조(신규임용)** ① 의학계열 연구전담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자격 및 절차는 「전임교원 임용규정」 및 「전임교원 임용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의학계열 연구전담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에 따른 경력산정은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22조에 따르고, 제7호의 의학계열 임상교원에게 적용하는 경력산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기간)** 의학계열 연구전담 전임교원의 계약기간은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제5조(처우)** ① 의학계열 연구전담 전임교원은 보수, 후생복지 및 기타 처우에 대해 본교 동일직급 타 전임교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 단, 교육에 대한 의무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의학계열 연구전담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동안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여 보수와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는 의료기관에서 지급한다. 이때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복무)** ① 의학계열 연구전담 전임교원은 소속 대학(원) 또는 소속 연구소(원)에 상근하면서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 의학계열 연구전담 전임교원은 정교수 승진 이후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사항 미이행 시 「교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의무사항 이행 정도에 따른 보수의 감액 지급과 관련된 세부기준은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적용한다.

③ 의학계열 연구전담 전임교원의 기타 복무사항은 「교원인사기본규정」 및 「전임교원 임용규정」을 따른다.

**제7조(재임용 자격 및 절차)** ① 대학(원)장 및 연구소(원)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4월말 또는 10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임용대상자로부터 전임교원 재임용심사 신청/포기서 [별표 1]을 접수한다.

② 재임용 심사를 위한 평가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학(원) : 소속 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전공지도교수(대학원은 부대학원장), 대학(원)장이 지명한 피평가자와 동일학과(전공)의 상위 직급교원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2. 연구소(원) : 소속 연구소(원)장, 연구소(원)장이 지명한 피평가자와 동일학과(전공)의 상위 직급 교원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3. 의학계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과학연구원장, 해당병원장(의대, 치대, 한의대), 경희의료원장 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의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 (3) 대학(원)장 및 연구소(원)장은 재임용심사 대상교원의 재임용 예정 4개월 전(4월말 또는 10월말)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며, 재임용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임용계약서에 별도의 재임용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
  2. 임용계약서에 별도의 재임용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전임교원 임용규정」제41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기준("이하 재임용 기준"이라 함)으로 신규임용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2025년 2월 28일 이전 신규임용 교원: 재임용 기준의 2배 이상 실적
      - 2) 2025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 재임용 기준의 3배 이상 실적
      - 3) 2025년 3월 1일 이후 승진임용된 교원: 신규임용일에 관계없이 재임용 기준의 3배 이상 실적
    - 나. 소속 부서장은 재적교원 2/3 이상의 동의하에 소속 부서의 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부서에 적용되는 강화된 재임용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강화된 재임용 내규는 반드시 캠퍼스 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강화된 재임용 내규를 우선 적용한다.
  3. 교원심사평정표 [별표 3]의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
- (4) 재임용은 소속 부서의 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단, 교무처장은 평가대상자 소속 부서의 교원심사평정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에 재평정을 요청할 수 있다.
- (5)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재임용에 관한 절차는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5장 재임용에 따른다.

- 제8조(승진심사 신청자격 및 절차)** ① 승진심사 대상자는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직급별 최소승진소요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 ② 대학(원)장 및 연구소(원)장은 승진심사 대상자로부터 차기 승진예정일 4개월 전(4월말 또는 10월말)까지 전임교원 승진심사 신청/포기서 [별표 2]를 접수한다.
- ③ 승진심사를 위한 평가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학(원) : 소속 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전공지도교수(대학원은 부대학원장), 대학(원)장이 지명한 피평가자와 동일학과(전공)의 상위 직급교원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2. 연구소(원) : 소속 연구소(원)장, 연구소(원)장이 지명한 피평가자와 동일학과(전공)의 상위 직급 교원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3. 의학계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과학연구원장, 해당병원장(의대, 치대, 한의대), 경희의료원장 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의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대학(원)장 및 연구소(원)장은 승진심사 대상교원의 승진예정일 4개월 전(4월말 또는 10월말)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며, 승진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임용계약서에 별도의 승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
  2. 임용계약서에 별도의 승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전임교원 임용규정」제28조 제4항 제1호 가목을 기준(이하 "승진 기준"이라 함)으로 신규임용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2025년 2월 28일 이전 신규임용 교원: 승진 기준의 2배 이상 실적
      - 2) 2025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 승진 기준의 3배 이상 실적
      - 3) 2025년 3월 1일 이후 승진임용된 교원: 신규임용일에 관계없이 승진 기준의 3배 이상 실적
    - 나. 소속 부서장은 재적교원 2/3 이상의 동의하에 소속 부서의 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부서

에 적용되는 강화된 승진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강화된 승진 내규는 반드시 캠퍼스교원 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강화된 승진 내규를 우선 적용한다.

### 3. 교원심사평정표 [별표 3]의 점수가 평균 80점 이상

- ⑤ 승진임용은 소속 부서의 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되,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교원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⑥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자의 소속 부서의 교원심사평정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에 재평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승진에 관한 절차는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3장 승진임용에 따른다.

**제9조(연구실적 인정기준)** ① 연구실적은 인쇄출판된 실적물을 기준으로 하되, 게재 확정된 연구실적의 인정여부는 소속 부서의 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해당 연구실적은 차기 승진 및 재임용 심사 시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②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 반영되는 연구실적 목록은 「전임교원 임용규정」 [별표 6]을 따르며, 해당 연구실적의 평정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을 따른다.

③ 타 대학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우, 본교 임용 이후의 연구실적부터 인정한다.

④ 휴직교원이 휴직기간 중 국내외에서 행한 전공 및 담당과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와 재임용 심사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행한 연구실적을 소속 부서의 교원인사소위원회 및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업적평가)** 의학계열 연구전담 전임교원의 업적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과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을 따르되, 등급 구분을 위한 기준은 평가계열 상위 1% 이내 E급, 상위 1% 초과 5% 이내 S1급, 상위 5% 초과 15% 이내 S2급, 상위 15% 초과 시 G급으로 한다.

**제11조(보칙)**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2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본 시행세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업적평가)는 2024년 교원업적평가 차등그룹 선정부터 적용한다.
- ② 2025.02.28. 이전에 임용(신규임용, 승진, 재임용)된 교원이 승진 심사에서 탈락 혹은 승진심사를 포기하여 승진이 유예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직급별 최초 승진예정일이 2025.03.01. 이후인 교원의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최초 승진예정일로부터 3년간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28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명시된 연구실적 기준의 2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해야 하고, 이후로는 3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해야 한다.
2. 직급별 최초 승진예정일이 2025.03.01. 이후인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최초 승진예정일로부터

3년간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41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명시된 연구실적 기준의 2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해야 하고, 이후로는 3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해야 한다.

####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임교원 재임용심사 신청서**

## 전임교원 재임용심사 신청서

## APPLICATION FOR RE-APPOINTMENT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소속 DEPARTMENT			
	현직급 CURRENT POSITION		신규임용일 DATE OF INITIAL APPOINTMENT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임용사항 APPOINTMENT INFORMATION	현임용기간 CURRENT APPOINTMENT PERIOD			
	평가 대상기간 EVALUATION PERIOD			
	재임용 대상기간 RE-APPOINTMENT PERIOD			

20년 월 일부 전임교원 재임용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I hereby submit this re-appointment application for the term beginning as of DATE

일 시 (DATE) : 20 . . . .

신청인(APPLICANT) :

(서명/SIGNATURE)

##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위원장 귀하

To the Chairman of the Faculty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별표 2] 전임교원 승진심사 신청/포기서

## 전임교원 승진심사 신청/포기서

APPLICATION FOR PROMOTION / RENUNCIATION OF PROMOTION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소 속 DEPARTMENT		
	현 직급 CURRENT POSITION		신규임용일 DATE OF INITIAL APPOINTMENT
	성 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임용사항 APPOINTMENT INFORMATION	연구실적 평가 대상기간 EVALUATION PERIOD		
	평가 대상기간 내 휴직 및 징계기간 LEAVES OR DISCIPLINARY PERIOD DURING THE EVALUATION PERIOD		
<p>※ 해당란에 √표시 하시오.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box.</p> <p><input type="checkbox"/> 20 년 월 일부 전임교원 승진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a promotion for the term beginning as of <u>DATE</u></p> <p><input type="checkbox"/> 20 년 월 일부 전임교원 승진심사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a renunciation of promotion for the term beginning as of <u>DATE</u></p>			
일 시(DATE) : 200 . . .			
신청인(APPLICANT) : (서명/SIGNATURE)			

##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위원장 귀하**

To the Chairman of the Faculty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별표 3] 의학계열 연구전담 전임교원 심사 평정표

### 의학계열 연구전담 전임교원 심사 평정표

피평가자	소속 : 직위 : 성명 :		평가자 직위 : 성명 : (인)		
평정항목	배점	평정내용 (방법)	평가점수	비고	
1.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20)	5	1-1. 인성 및 품위유지 (성희롱, 진정, 투서, 급여·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기타 물의 등)			
	5	1-2. 근태 및 성실성 (출퇴근(근태) 상황 및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타 업무 종사 여부 등)			
	5	1-3. 조직적응도 (동료연구자들과의 관계 등)			
	5	1-4. 교육관계 법령 및 교내 제규정 준수 여부 (징계 관련 대내외 물의,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2. 연구능력 및 실적 (80)	10	2-1. 학문연구에 대한 향후 발전 가능성			
	10	2-2. 임용 후 현재까지 연구 진행 상황			
	10	2-3. 연구전담 교수로서의 열의			
	10	2-4. 논문 또는 실적 내용의 창의성, 해당 학문분야에서의 기여도			
	20	2-5. 연구업적 게재 학술지의 전문성 및 지명도			
	20	2-6. 연구업적의 협업/중개에 관한 평가 (임상교수 및 Fellow 교수와의 공동연구 수행 비율 반영) - 매우많음:20, 많음:15, 보통:10, 적음:5, 매우적음:0			
합계					
종합 의견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